## 상주시 공고 제2024 - 916호

「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 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4일

상 주



# 「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체육시설 정기휴관일 및 이용료 변경
  - 1) 매월 첫째, 셋째주 월요일 휴관을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변경
    - 격주 휴관에 따른 이용객 혼선 해소
    - 체육시설의 주기적인 관리 및 정비시간 확보로 안정적인 시설관리
  - 2) 동·하절기 및 실내·외로 구분된 이용 시간 동일하게 변경
  - 3) 강습회원과 자유이용회의 이용료 차등 적용 및 강습료 인상
- 4) 현실성 있는 시설별 이용요금 적용으로 경영수지 적자폭 감소나. 인용된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
  - 1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 - 2) 「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# 3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### 4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4년 7월 25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새마을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일반우편: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1432(상주국민체육센터)

2) 전자우편: sejinhwang@korea.kr

3) 팩 스: 054-536-9751

## 5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새마을체육과(전화: 054-537-767 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홈페이지(http://www.sangju.go.kr →행정정보→법령 정보→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생활체육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

O 성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전 화 번 호:

조례 개정안 내용	의 견	비고